

변경대비표(일반및자펀드)

1. 대상 펀드:

no.	펀드명	비교 지수	모펀드 비교 지수	투자 대상 자산 추가	모펀드 투자 대상 자산	환매 수수료 삭제	결산	변 동 성	변경 사항
1	미래에셋좋은기업 ESG 증권투자신탁(주식)	○	○	-	-	-	-	-	-
2	미래에셋개인연금고배당포커스 30 증권전환형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-	-	-	○	-	-	-	-
3	미래에셋개인연금고배당포커스증권전환형투자신탁 1 호(주식)	-	-	-	○	-	-	-	-
4	미래에셋개인연금평생소득 TIF 혼합자산투자신탁	-	-	-	○	-	-	○	10)
5	미래에셋고배당포커스연금저축증권전환형투자신탁 1 호(주식)	-	-	○	○	-	-	-	10)
6	미래에셋고배당포커스증권투자신탁 1 호(주식)	-	-	○	○	-	-	-	8), 9)
7	미래에셋상생플러스증권투자신탁(채권혼합)	-	-	-	○	-	-	-	8), 9), 10)
8	미래에셋자산관리 TIF 혼합자산투자신탁	-	-	-	○	-	-	-	-
9	미래에셋퇴직연금고배당포커스 40 증권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-	-	-	○	-	-	-	-
10	미래에셋퇴직연금고배당포커스증권투자신탁 1 호(주식)	-	-	○	○	-	-	-	10)
11	미래에셋평생소득 TIF 혼합자산투자신탁	-	-	-	○	-	-	○	-
12	미래에셋 3 억만들기술로문증권투자신탁 1 호(주식)	-	-	-	-	-	○	-	-
13	미래에셋 KRX300 인덱스증권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	-	-	-	-	-	○	○	10)
14	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하이일드증권전환형투자신탁 1 호(채권-재간접형)	-	-	-	-	-	○	○	-
15	미래에셋개인연금배당프리미엄증권전환형투자신탁 1 호(주식혼합)	-	-	○	-	-	-	○	10)
16	미래에셋글로벌솔루션증권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	-	-	-	-	○	-	○	10)
17	미래에셋맵스미국부동산투자신탁 9-2 호	-	-	-	-	-	○	-	10)
18	미래에셋재형글로벌인컴증권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-	-	○	-	-	○	○	8), 9), 10)
19	미래에셋전략배분 TDF2030 혼합자산투자신탁	-	-	-	-	-	-	○	10)
20	미래에셋차이나 H 인덱스증권투자신탁 1 호(주식)	-	-	○	-	-	○	○	10)
21	미래에셋코어테크청년소득공제증권투자신탁(주식)	-	-	-	-	-	-	-	10), 11)

2. 변경 사항:

- 1) 비교지수 삭제 및 참조지수 추가
- 2) 모투자신탁 비교지수 삭제 및 참조지수 추가

- 3) 투자대상자산 추가
- 4) 모투자신탁 투자대상자산 추가
- 5) 환매수수료 삭제
- 6) 펀드 결산에 따른 재무정보 및 주요 수치 업데이트
- 7) 투자위험등급 관련 변동성 값 등 업데이트
- 8) 고난도 관련 문구 반영
- 9) 법 개정사항 반영
- 10) 이해관계인 삭제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명 변경
- 11) 취득한도 오기 정정

3. 효력발생예정일: 2023년 3월 31일 (금)

4. 변경 내용:

- 1) 비교지수 삭제 및 참조지수 추가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<비교지수>	<u>KRX ESG Leaders 150</u>	<삭제>
<참조지수>	<신설>	<u>KRX ESG Leaders 150</u>

- 2) 모투자신탁 비교지수 삭제 및 참조지수 추가

미래에셋좋은기업ESG증권모투자신탁(주식)		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<비교지수>	<u>KRX ESG Leaders 150</u>	<삭제>
<참조지수>	<신설>	<u>KRX ESG Leaders 150</u>

- 3) 투자대상자산 추가

[집합투자규약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 15 조(투자대상자산 등)	<p>②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.</p> <p>1. ~2. <생략></p> <p><u>3. <신설></u></p>	<p>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.</p> <p>1. ~2. <생략></p> <p><u>3. 환매조건부매수(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.)</u></p>

	<p>②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.</p> <p>1. ~2. <생략></p> <p>3. <신설></p> <p>4. 제 1 호 및 제 2 호에 준하는 외화표시 자산</p>	<p>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.</p> <p>1. ~2. <생략></p> <p>3. 환매조건부매수(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.)</p> <p>4.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외화표시 자산</p>
--	---	---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 2 부. 8. 가. 투자대상	<p>[단기대출 주 1),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 2), <u><신설></u> <생략> <u><신설></u></p>	<p>[단기대출 주1),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2), 환매조건부매수 <생략> ※주) 환매조건부매수는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을 말함.</p>
	<p>[단기대출 주 1),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 2), <u><신설></u> 및 이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] <생략> <u><신설></u></p>	<p>[단기대출 주1),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2), 환매조건부매수 및 이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] <생략> ※주) 환매조건부매수는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을 말함.</p>

4) 모투자신탁 투자대상자산 추가

주1)

미래에셋고배당포커스증권모투자신탁(주식)		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[제2부 별첨1]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. 나. (1) 투자대상	<p>[단기대출 주 1),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 2), <u><신설></u> <생략> <u><신설></u></p>	<p>[단기대출 주1),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2), 환매조건부매수 <생략> ※주) 환매조건부매수는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을 말함.</p>

5) 환매수수료 삭제

[집합투자계약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39조(환매수수료)	<p><u>①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(제26조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)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(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)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한다.</u></p> <p><u>② 환매수수료는 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(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, 이하 본 항에서 '이익금'이라 한다)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.</u></p> <p><u>1. 종류A 수익증권</u> <u>30일미만: 이익금의 70%</u></p> <p><u>2. 종류A-e 수익증권</u> <u>30일미만: 이익금의 70%</u></p> <p><u>3. 종류AG 수익증권</u> <u>30일미만: 이익금의 70%</u></p> <p><u>4. 종류C 수익증권</u> <u>30일미만: 이익금의 70%</u></p> <p><u>5. 종류C-e 수익증권</u> <u>30일미만: 이익금의 70%</u></p> <p><u>6. 종류CG 수익증권</u> <u>30일미만: 이익금의 70%</u></p> <p><u>7. 종류C-I 수익증권</u> <u>30일미만: 이익금의 70%</u></p> <p><u>8. 종류F 수익증권</u> <u>30일미만: 이익금의 70%</u></p> <p><u>9. 종류S 수익증권</u> <u>30일미만: 이익금의 70%</u></p> <p><u>10. 종류C-P 수익증권</u> <u>해당사항없음</u></p> <p><u>11. 종류C-Pe 수익증권</u> <u>해당사항없음</u></p> <p><u>12. 종류C-P2 수익증권</u> <u>해당사항없음</u></p> <p><u>13. 종류C-P2e 수익증권</u> <u>해당사항없음</u></p>	<p><u>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.</u></p>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<환매수수료>	[A, A-e, AG, C, C-e, CG, C-I, F, S] 3 0일미만: 이익금의 70% [C-P, C-Pe, C-P2, C-P2e] 없음	환매수수료 없음

6) 펀드 결산에 따른 재무정보 및 주요 수치 업데이트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요약정보<투자비용>	-	총보수·비용(피투자집합투자 기구 보수포함) 업데이트
제 2 부.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	-	총보수·비용(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포 함) 및 증권거래비용 등 업데이트
제 3 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 실적 등에 관한 사항	-	재무정보 및 주요 수치 업데이트
제 5 부. 4. 가.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	-	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업데이트

7) 투자위험등급 관련 변동성 값 등 업데이트

펀드명	변경 전 등급	변경 후 등급	변경 전(%)	변경 후(%)
미래에셋KRX300인덱스증권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	<u>1</u>	<u>2</u>	<u>27.09</u>	<u>21.95</u>
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하이일드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(채권-재간접 형)	<u>4</u>	<u>3</u>	<u>9.66</u>	<u>10.77</u>
미래에셋개인연금배당프리미엄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(주식혼합)	<u>2</u>	<u>3</u>	<u>18.63</u>	<u>14.31</u>
미래에셋개인연금평생소득TIF혼합자산자투자신탁	4	4	<u>6.39</u>	<u>5.38</u>
미래에셋글로벌솔루션증권자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	<u>3</u>	<u>2</u>	<u>14.83</u>	<u>15.23</u>
미래에셋재형글로벌인컴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<u>4</u>	<u>3</u>	<u>9.61</u>	<u>10.08</u>
미래에셋전략배분TDF2030혼합자산자투자신탁	<u>3</u>	<u>4</u>	<u>10.28</u>	<u>8.75</u>
미래에셋차이나H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1호(주식)	<u>1</u>	<u>2</u>	<u>25.78</u>	<u>24.77</u>
미래에셋평생소득TIF혼합자산자투자신탁	4	4	<u>6.32</u>	<u>5.87</u>

8) 고난도 관련 문구 반영

[집합투자계약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2조(용어의 정의)	<신설>	- “고난도금융투자상품”이라 함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의한 금융투자상 품을 말한다.

제53조(고난도금융투자상품)	<신설>	이 투자신탁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서 정하고 있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.
-----------------	------	---

9) 법 개정사항 반영

[집합투자규약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13조(자산운용지시 등)	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 1 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처분 등을 한 경우 <u>투자신탁재산으로</u>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. 다만,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 64 조제 1 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처분 등을 한 경우 <u>그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</u>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. 다만,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제15조(투자대상자산 등)	-채권 <중략>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<생략></u> -자산유동화증권 <중략>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<생략></u>	<삭제>
제17조(운용 및 투자 제한)	2. <생략> 나. <중략>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<중략>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, <생략></u>	2. <생략> 나. <삭제>
제42조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)	①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<u>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.</u> ②~③ <생략> <신설>	①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법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투자신탁재산에 손실을 초래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수익자 총회 결의를 거쳐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. ②~③ <생략> ④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제 1 항 외의 사유로 수익자 총회 결의를 거쳐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<u>정당한 사유없이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</u>

		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 한도 내에서 그로 인한 손실의 보상 또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--	--	---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2부 8. 가. 투자대상	-채권 <중략>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</u> <u>또는</u> <생략> -자산유동화증권 <중략>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</u> <u>또는</u> <생략>	<삭제>
제2부 8. 나. 투자제한	-동일종목투자 (예외) 다만, 다음의 경우에는 각 항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%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. 나. <중략>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</u> <u>또는</u> <중략>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</u> , <생략>	-동일종목투자 (예외) 다만, 다음의 경우에는 각 항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%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. 나. <삭제>

10) 이해관계인 삭제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명 변경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4부 1. 가. 회사의 개요	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 중 집합투자업자의 주요 이해관계인 현황 - <u>일반사무관리회사</u> : <u>미래에셋펀드서비스</u> - 신탁업자 : 국민은행	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 중 집합투자업자의 주요 이해관계인 현황 <삭제>
제4부 4.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	회사명: <u>미래에셋펀드서비스(주)</u>	회사명: <u>한국펀드파트너스(주)</u>

11) 취득한도 오기 정정

[집합투자계약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16조 (투자대상자산 취득 한도)	집합투자업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.	집합투자업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.

	<p>1. 제 3 조제 5 항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80% 이상으로 한다.</p> <p>2. 제 15 조제 2 항 각호 방법에서의 운용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% 이하로 한다. 다만, 본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%이하의 범위 내에서 20%를 초과할 수 있다.</p>	<p>1. 제 3 조제 5 항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90% 이상으로 한다.</p> <p>제15조제2항 각호 방법에서의 운용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 이하로 한다. 다만, 본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%이하의 범위 내에서 10%를 초과할 수 있다.</p>
--	---	--

*상기 변경사항에 대한 집합투자규약 및 정관 조항 번호는 펀드 별로 상이할 수 있으나, 변경 내용은 동일함

미래에셋자산운용(주)